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수산시장 배송복도 시설물 무단 설치자 과태료 부과 요청

수산시장 배송복도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도매시장 시설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 가. 부과 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	000000-0000000	서울시 송파구 ○○○○ ○○○	010-0000-0000

### 나. 위반 내용

- 수산시장 배송복도에 수족관, 도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활어, 갑각류(킹크랩, 대게) 등을 판매 함



- 2017.3.6(유선 및 문자), 2017.3.21(서면)으로 2회에 걸쳐 무단 설치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2017.3.29 현재 까지 미 이행

다. 부과 금액 : 과태료 250만원(위반 횟수 2회)

- 2016. 10. 28 경매장 내에 소금, 수족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과태료 125만원 기 부과(1회)

라. 관련 규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2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90조(과태료) 제2항 2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의 2 개별기준 자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

- 따로붙임 : 1. 가락동 수산시장 배송복도 내 무단 설치 시설물 정비 통보 문서 1부  
2. 고소장 1부(e-mail 제출). 끝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차장                      김병일    팀장                      최영규    유통본부장                      김성수                      03/30

협조자

시행    수산팀-554                      (2017.03.30)                      접수                      ()  
 우 138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전화 02-3435-0427    전송 02-3435-0443 / mosan@garak.co.kr                      /    공개